

정부간 관계(IRG)연구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설치 및 명칭) 본 연구소는 선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두며, 그 명칭은 정부간 관계(IRG) 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)라 한다. <개정2004.1.1>

제2조(목적) 연구소는 정부간 관계(IRG) 및 지방정부 운영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2004.1.1>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2004.1.1>

1. 정부간 관계(IRG)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
2. 정부간 관계(IRG)에 관한 뉴스 레터 및 논문집 발간
3. 정부간 관계(IRG) 연구도서 확보
4. 연구발표 개최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(조직) ①연구소에는 연구분야별 분과팀, 행정실,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행정실은 각 분과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임원) ①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며, 필요에 따라 부소장 1인과 각 분과팀에 팀장 1인을 둘 수 있다.
②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.
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④부소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소장을 보좌한다.
⑤각 분과팀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각 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
제3장 연구원

제6조(연구원) ①연구원은 전임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1. 전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가진 자로 하되, 전임교원을 제외한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.
2. 특별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 또는 해당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.
②연구조원은 연구업무를 보조할 목적으로 필요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4장 운영위원회

- 제7조(구성 및 회의)**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운영위원회는 각 분과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.
③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④위원회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
- ①연구소의 사업계획수립
- ②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- ③분과팀의 설치 및 폐지
- ④연구소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
- ⑤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
- ⑥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장 보고

제9조(보고) 연구소는 운영보고서, 결산서, 사업계획서, 예산서 등을 연구정보처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

제6장 재정

제10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수탁연구비, 국고보조금 및 기타 연구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.

제7장 기타

제12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관련법,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.

부칙<1999.9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04.1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